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583
------	-----

2023.4.24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7일, 신복자 의원 외 30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4.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신복자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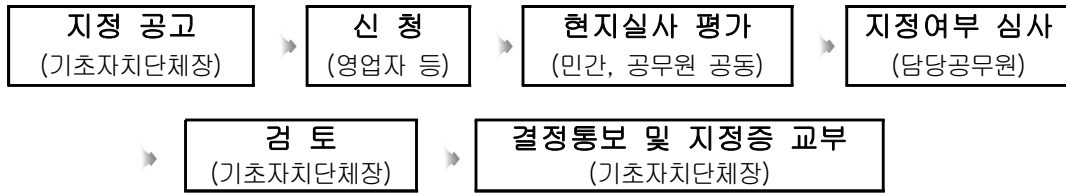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제정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산에 필요한 자원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조례 제정의 배경

-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기초자치단체장이 가격과 위생, 청결과 친절도, 공공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·관리하고 있음.

< 지정 절차 방법 >



-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159개 시·군·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.
- 시행(2011년) 초기에는 전국 6,57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외식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6,135개소가 운영 중임.

#### <17개 광역자치단체 착한가격업소 및 조례 제정 현황('23.2기준)>

연번	자치단체명	착한가격업소	조례	연번	자치단체명	착한가격업소	조례
1	서울특별시	831개소	×	10	강원도	428개소	○
2	부산광역시	601개소	○	11	충청북도	287개소	○
3	대구광역시	268개소	○	12	충청남도	324개소	×
4	인천광역시	224개소	○	13	전라북도	308개소	○
5	광주광역시	196개소	○	14	전라남도	362개소	○
6	대전광역시	340개소	○	15	경상북도	507개소	×
7	울산광역시	105개소	○	16	경상남도	388개소	○
8	세종특별시	38개소	○	17	제주특별자치도	236개소	○
9	경기도	692개소	×	합 계		6,135개소	13개

- 서울시는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8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 (12개 자치구<sup>1)</sup> 조례 제정)이며,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왔음.
- 그러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·관리 업무가 자치구 소관 사무로 판단해 별도의 지원 조례는 제정하지 않음.

1) 12개 자치구 조례 제정(종로, 성동, 광진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강서, 금천, 영등포, 동작)

- 이로 인해 운영 예산 대부분을 시비보조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.

< 25개 자치구 품목별 착한가격업소 현황('23.2.기준) >

구분	계	외 식 업						기타 개인 서비스업				
		소계	한식	일식	중식	경양식	기타(외식)	소계	세탁업	이·미용업	숙박업	기타(목욕업 등)
계	831	521	419	8	39	8	47	310	49	240	1	20
종로구	19	9	6			1	2	10		8	1	1
중 구	14	11	10		1			3	1	2		
용산구	20	19	14	2	1	1	1	1		1		
성동구	16	7	6		1			9	3	6		
광진구	48	22	14		2	1	5	26	5	20		1
동대문	17	13	12		1			4		4		
종랑구	34	16	11		4		1	18	1	14		3
성북구	17	14	13			1		3	1	2		
강북구	20	8	7				1	12	3	8		1
도봉구	45	28	19		4		5	17		16		1
노원구	18	9	7		2			9	2	7		
은평구	25	18	16	1			1	7	1	6		
서대문	44	26	22		2		2	18		17		1
마포구	50	25	19	1	1		4	25	2	22		1
양천구	24	10	7		3			14	2	11		1
강서구	23	9	8		1			14	1	12		1
구로구	53	28	24		2		2	25	4	17		4
금천구	39	21	18		2		1	18	7	8		3
영등포	23	15	12	1	2			8	1	7		
동작구	87	61	52	1	2	1	5	26	9	17		
관악구	48	33	25	1	1		6	15	2	12		1
서초구	13	13	10			1	2					
강남구	75	72	58	1	3	1	9	3		3		
송파구	44	25	20		4	1		19	4	15		
강동구	15	9	9					6		5		1

-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“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추진계획(‘23.02.)” 에 따라 국비보조금 일부를 지원(국비 30 : 시비 70)받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.

<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교부금 지원 현황 >

년도별	2023년 상반기	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	2018년	
교부금액	국비	88	292백만원	248백만원	254백만원	312백만원	299백만원	303백만원
	시비	204						
년도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	-	
교부금액	300백만원	309백만원	244백만원	245백만원	203백만원	158백만원	-	

-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<sup>2)</sup>할 수 있고,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<sup>3)</sup>.
-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공고와 심사,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울시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함.

## 다. 조문별 검토

### (1)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“착한가격업소”를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·품질·위생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,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함.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3) 대법원 2007.12.13. 선고 2006추52 판결례, 대법원 2009.12.24. 선고 2007추141 판결례 등

-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나, 법률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례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 필요함.

## (2)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▶ “착한가격업소” 표지판, ▶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, ▶ 종량제·쓰레기봉투 지원, ▶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보조, ▶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 최근 들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고물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거나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.
- 따라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참여·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.
- 다만,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혜택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에 비해 소액에 불과하여 자격유지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어려우므로, 지방세나 상·하수도 요금 감면,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함.

### (3)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.
-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고 이용 증대효과가 미미하므로,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이끌어야 함.

### (4)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시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가격 외에도 위생상태나 업소의 청결도, 가격과 원산지 표시 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점검이 필요함.
- 또한,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업소의 매출 변화, 소비자의 반응 등을 꾸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.
- 다만, 지정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운영은 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

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착한가격업소 운영의 내실화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시·구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.

#### (5)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하도록 규정함.
- 이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역사회공헌과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상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#### 라. 종합의견

- 제정안은 2011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행된 착한가격업소 운영이 시·군·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·도별 지원으로 확장되면서 지역 물가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·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음.
-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활동,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



업소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인정받아 가치소비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어야 함.

- 또한,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후 지역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,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은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·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다만, 착한가격업소는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,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는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는 소관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법적 한계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(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8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7일

발 의 자: 신복자, 김규남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 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 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 
박춘선, 소영철, 신동원,  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 
윤기섭, 이원형, 임춘대,  
장태용, 최민규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31명)

### 1. 제안이유

-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」

##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,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착한가격업소” 표지판
2.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
3. 종량제·쓰레기봉투 지원
4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5.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이용 활성화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현황 점검 등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유공자 표창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